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도 시 교 통 정 비 축 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사업 등을 명시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약식교통영향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해서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는 약식교통영향평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약식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정함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안 제13조의10,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7조)

「재난안전법」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신청 접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관리, 대행 실적 공고 등 교통영향평가협회로 위탁할 업무를 정함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사. 규제의 재검토(안 제39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기준,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30. ~ 2022. 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항제1호”를 “제7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을 일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이하 “약식 교통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별표1의2와 같다.

제13조의9부터 제13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9(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13조의10(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시기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제13조의11(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2의3에 따른 인적·물적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 가.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 규정
 -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2의3에 따른 지정요건과의 적합성,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⑥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 전년도 11월 30일
 2.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은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3”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이하 이 조에서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이라 한다)에 교통영향평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에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하여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53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접수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의 공고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의 접수

· 확인 · 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 공고
 6.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
- ③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상반기 업무 처리 결과: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업무 처리 결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

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기준
2.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내용 등
3.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	200만원
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7호	5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별표 2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후 2023년 3월 23일까지 같은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4호	500만원
---	--------------	-------

별표 5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를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법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5호	500만원
--	--------------	-------

별표 5 제2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

약식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제13조의2제7항 관련)

1. 별표 1 제1호가목3)의 공원
2. 별표 1 제2호가목의 단일용도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같은 목 5)의 종교시설 중 사찰 및 기도원
 - 나. 같은 목 8)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및 병원은 제외한다)
 - 다. 같은 목 9)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및 도서관
 - 라. 같은 목 18)의 묘지 관련 시설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공동주택
 - 나. 제13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4.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비고 제5호 가목, 나목 및 영 제13조의8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나.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수차에 걸쳐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확장·증축된 규모가 합산하여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기준(제13조의9 관련)

구분 기술자등급	기술자격 요건	학력·경력 요건
1. 특급 평가자	가.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급 평가자	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2)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급 평가자	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1)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2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급 평가자	가. 교통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교통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통	1) 관련 학과의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 2)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교통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비고

1. 등급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해당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위 표에서 기술자격 요건란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한다.
3. 위 표에서 학력·경력 요건란의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 중 교통직무 분야의 이수과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4. 위 표에서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가. 교통영향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검토·심의에 관한 업무 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검토에 관한 업무 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된 용역의 감독에 관한 업무, 교통영향평가 관련 연구에 종사한 경력
5.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6.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제13조의10제1항 관련)

1. 종류

- 가. 최초교육 :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 나. 계속교육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2. 내용

기술자 윤리교육, 교통공학, 도로 계획 및 설계, 주차장 계획 및 설계, 교통영향평가법·제도, 그밖에 교통영향평가 실무 관련 내용으로 한다.

3. 대상 및 시간

구분	대상	시간
가. 최초교육	1) 특급 평가자	40시간
	2) 초급·중급·고급 평가자	35시간
나. 계속교육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사람	20시간

4. 이수시기

- 가. 최초교육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후 다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 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부터 다목까지의 시기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 기간을 명시하고 연기 사

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제4호라목에 따른 교육·훈련 연기의 세부사항, 그밖에 교육·훈련시간의 인정 등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의3]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제13조의11 관련)

구분	지정요건
1. 인력 및 조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교수요원을 4명 이상 확보할 것 1) 교통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통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 나.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교육생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1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장비	다음의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모두 갖추어 것 가. 사무실: 면적 30㎡ 이상(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나. 강의실: 면적 60㎡ 이상 다.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라.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장비

비고

- 위 표에서 교통 관련 분야의 학위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 중 교통직무 분야에서 취득한 학위를 말한다.
-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서류 등을 통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이상 임차하는 경우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강의실에는 책상·의자 및 빔 프로젝터·스크린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은 인터넷 교육 신청·접수, 출결석 상황관리, 수수료 발급 및 교육이력의 기록·관리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혼잡수준 결정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1. 평균 통행속도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가. 도시고속도로

(단위: km/h)

편도 4차로 이상
30 미만

나. 간선도로

(단위: km/h)

편도 4차로 이상	편도 3차로 이하
21 미만	15 미만

2.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지체시간에 따른 교차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단위: 초)

신호교차로(평균제어지체시간)	무신호교차로(평균운영지체시간)
100 이상	50 이상

비고: 차량당 평균제어(또는 운영) 지체시간이란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차량당 평균 제어(또는 운영) 지체를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호	500만원
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1천만원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3호	1천만원
마.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4호	500만원
바. 법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5호	500만원
사. 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	10만원
아.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4항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자.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4호	1천만원
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	200만원
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7호	50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을 일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이하 “약식교통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별표1의2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예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 ----- ----- ----- ----- ---. --- 제7항제1호----- ----- ----- -----.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⑦ (생략) <u><신설></u>	⑦ 제6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3조의9(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신 설>

인정기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13조의10(교육·훈련의 종류·시기 등) ①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종류·시기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시기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교육·훈련의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11(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2의3에 따른 인적·물

적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정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만 해당한다)

2. 별표 2의3에 따른 지정기준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가. 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
을 포함한다)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
관의 운영 규정

다. 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

인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별
표 2의3에 따른 지정요건과의
적합성,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
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
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해야 한다.

⑥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교육
· 훈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
전년도 11월 30일

2.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

	<u>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훈련 계획은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u> <u>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② (생략)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 ④ (생략)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⑥·⑦ (생략) <u><신 설></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 ----- -----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⑥·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			
1. 평균 통행속도가 <u>별표 2</u>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1. ----- <u>별표 3</u> -----			
2. 교차로 지체시간이 <u>별표 2</u>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	2. ----- <u>별표 3</u>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이하 이 조에서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이라 한다)에 교통영향평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에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하여

제37조(권한의 위임) (생략)

<신설>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53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접수
2.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폐업 신고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의 공고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의 접수·확인·관리 및 같

<신 설>

<신 설>

은 조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5.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
적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공고

6.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
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
축·운영

③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
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상반기 업무 처리 결과: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업무 처리 결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신 설>

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및 같은 영 제18조제2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하는 정보(제1호의 사무만 해당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
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
향평가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
무

제3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표 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 기준

2. 별표 2의2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기술자 교육·훈련의 종
류·내용 등

3. 별표 2의3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연 락 처	(044) 201 - 3812